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 2.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 지 과)

1. 개정이유

-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하여 자금력 부족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농지연금 저당권 실행(임의경매) 전에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경매시 낮은 낙찰가액에 따른 농지연금 수급자와 농지관리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공사의 공공임대용 우량농지 매입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 확대(안 제19조의2)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법 제24조의4에 따라 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농지연금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안 제19조의13)

-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연금 가입자가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임의경매를 실행하지 않고 담보농지를 매입하여 가입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농지연금 담보농지 매입 시 채권 정산 방법 명시(안 제19조의13)

-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에 따라 농지연금채권 회수와 정산 방법 명시

라. 매입농지의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1조)

-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공사가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붙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6. 법 제24조의4에 따라 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19조의13제2항 중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종료된”을 “종료된 경우와 제2항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1.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는 방법
2.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3. 담보농지를 매입하는 방법

제3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사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정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생략) ② (생략)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6. 법 제24조의4에 따라 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① (생략)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공사는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매입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 다
음 각 호의 -----
-----.

1.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는 방법

2.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3. 담보농지를 매입하는 방법

③ (현행과 같음)

④ -----
----- 종료된 경우와 제2항제3호의 -----

-----.
-----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

1. ~ 8. (생략)

<신설>

1. ~ 8. (현행과 같음)

9. 공사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정비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2, 1742